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폐지이유

가. 폐기물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음.

나. 이에 「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는 관련 상위법령과 내용이 중복되어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상위법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해당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기획감사실-7835(2018. 10. 5.)〕

라. 성별영향평가 : 제외 대상(「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8. 10. 19. ~ 2018. 11. 8.)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